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 (제 회)	

공직후보자등에관한정보의
수집및관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5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공무원 인물정보 수록기준을 개선하여 인물정보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데이터베이스 인물정보 제공 대상기관에 지방출연기관까지 확대하여 범국가적 활용을 지원하며, ‘국민추천제’ 운영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공직 인사의 개방성·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공무원 인물정보 수록기준 개선(안 제5조제2항)

지방공무원 인물정보 수록기준을 현행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확대하여 국가공무원 수록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인사혁신처장이 관련 인사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물정보 제공 대상기관 확대(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인사상 목적 등의 활용을 위하여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출연기관까지 확대함

다. 국민추천 방식을 통한 공직후보자 등 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명시적 근거 마련(안 제6조의3)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 등에 해당하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인사
혁신처장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국민
으로부터 적합한 인재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4급 이상(여성은 5급 이상)”을 “5급 이상”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기관(이하 “지방출연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연기관”으로 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국민추천제)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에 해당하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장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대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재를 추천받을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정무직 공무원(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2. 제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직위
 3.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
 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위원회 중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민간위원
-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천결과를 요청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활용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직후보자등의 인사 또는 성과평가 자료의 수집) ① (생 략) ② 인사혁신처장은 교육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 회의 의장에게 그 기관이 전산 관리하는 <u>4급 이상(여성은 5급 이상)</u> 및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주요 경 력, 임용사항, 자격사항 등 공직 후보자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인사 자료 또는 성과평가 자 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5조(공직후보자등의 인사 또는 성과평가 자료의 수집) ① (현 행과 같음) ② ----- ----- ----- ----- <u>5급 이상</u> ----- ----- ----- ----- ----- ----- ----- ----- ----- -----.
제6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 의 제공 및 직접 열람) ① 「국 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관”이란 <u>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을 말한다.</u>	제6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 의 제공 및 직접 열람) ① ---- ----- ----- ----- <u>공공기관, 지방공 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 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연기관(이하 “지방출 연기관”이라 한다)</u> ----
②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	② -----

3제4항 전단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국가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이 인사상 목적등으로 인사혁신처장에게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활용 목적, 자격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정보가 필요한 날부터 10일 전에 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요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인사사무를 처리해야 하거나 보안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 ⑥ (생략)

<신 설>

----- 공공기관, 지방공
기업 및 지방출연기관-----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의3(국민추천제)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에 해당하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장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대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재를 추천받을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 제1항에 따른 정무직 공무원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2. 제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직 위

3.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

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위원회 중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민간위원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천결과를 요청한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활용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인재기획담당관	
연 락 처	(044) 201 - 8179